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07. 12

사 회 건 설 위 원 회

# 2007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건설위원회]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감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고자 함.

## 2. 감사기간

○ 2007. 11. 21 ~ 11. 27 ( 기간 중 5일간 )

## 3.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

### ○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3호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

### ○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해당사무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자치구사무

##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위원장	간 사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구애라	신홍식	고현순,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	전문위원 사무국직원 속기사

##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월 일		감사장소	감사대상	비 고
2007.11.21(수)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	주민생활지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황보고 및 청취</li> <li>- 서류확인</li> <li>- 개별감사</li> <li>- 현장확인</li> </ul>
2007.11.22(목)			도시환경국	
2007.11.23(금)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포함)	
2007.11.26(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2007.11. 27(화)	오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오후		공개질의 및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평가</li> <li>- 강평</li> </ul>

※ 토요일 : 지역의정활동 및 2008년도 예산 사전 심사

## 6. 감사 방법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가. 일일보고

- 감사직후 간사는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 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여 본회의 상정의결

## 7. 시정 및 지적사항 : 32건 (별첨)

##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연번	감사 일시	감사 위원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
1	2007. 11.21	구애라	<p>○ 주차구획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차장을 자전거 도로로 개설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이 폐쇄되어 세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자전거 도로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 없이 추정치로 산출 하여 공사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반영한 사업에 이용자가 미비하여 실효성이 미약함.</p>	<p>○ 기존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곳을 자전거 도로로 개설함에 있어서 자전거 도로 개설 시 예상 이용자의 통계를 정확히 산출하는 등 지역별 도로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세 수입도 감소하고 이용률도 저조한 자전거 도로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기 바람.</p>
2	“	신홍식	<p>○ 각 부서에서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부 작성과 관련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방법이 상이하므로 이에 시정을 요구함.</p>	<p>○ 민원사무처리부 작성에 있어서 접수일과 처리일이 서로 뒤 바뀌지 않도록 하고, 양식 종류 란에는 진정, 다수민원, 이첩, 구청장에바란다, 기타 등 세분화하여 기록할 것이며, 또한 가능한 처리 담당자가 민원 사무 처리부에 최종 기록하는 등 민원사무처리부 작성에 철저를 기할 것.</p>
3	“	김동식	<p>○ 위기사항이 발생한 가구에 대해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156만원이하, 재산 9,50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하자로 보건복지부 규정으로 지급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부합되는 부적절한 행정 사례로 개선을 요구함.</p>	<p>○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p> <p>○ 보건복지부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을 적극 건의 하기 바람.</p>

4	2007. 11.21	김동식	<p>○ 바우처 사업이 금년 8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주민자치센터 직원 및 구민 대다수가 사업 자체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임.</p>	<p>○ 새롭게 사업이 추진되면 모든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여 구민들에게 안내를 해야 함에도 아직도 사업 추진에 대하여 모르는 직원과 구민이 대다수 이니만큼 통장회의, 자생단체 회의, 구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에 자료를 수록하여 구민에게 적극 홍보를 추진하고, 또한 전 복지관, 보육시설에 대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저 소득층 노인 및 아동들이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바람.</p>
5	“	김동식	<p>○ 우리구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단체에서는 아직도 회계 처리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사용하고 있는 등 명확한 회계처리가 미흡함.</p>	<p>○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 시 제출된 계획에 의거 사용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한 보조금 사용 시에는 신용카드로 사용토록 하여 간이세금영수증으로 대체하여 정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p>
6	“	김동식	<p>○ 관내 신길동과 도림동 일부 건물이 무단 증축하여 위법건축물이 되었는데도 건축물에 대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사후 조치와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 개선 요구함.</p>	<p>○ 관련부서에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건축물일 경우 즉시 철거를 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람.</p>
7	“	김동식	<p>○ 우리 구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점 관리대상자인 중국교포들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차후 이러한 착오 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후 환수조치를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행정행위는 행정력과 예산을 동시에 낭비하고 있으므로 개선 요구함.</p>	<p>○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해외에 장기간 또는 3개월 이상 체류 시에는 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동 주민자치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해외 출입국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장기간 해외 출국자에 보조금이 지원되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8	2007. 11.21	박성호	<p>○ 대립정보문화도서관 2차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공사비보다 65%가 증액(361백만원)하였고, 이중 110백만원은 예비비로 지출하였음.</p> <p>○ 예비비 지출 사유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발행할 시 지출을 해야 함에도 대립정보문화도서관 설계 변경하여 저 품질의 타일 마감재 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당초 48%에 해당하는 국·시비 보조금을 구 예산으로 집행하여 그만큼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p>	<p>○ 최초 사업 계획 시에는 철저한 사전 조사로 우리 구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p> <p>○ 향후 예비비 지출은 당초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만 지출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9	“	박정자	<p>○ 우리 구 관내 9개의 장례식장에 대하여 서울시와 합동단속 또는 1년에 1회 자체 단속을 실시하여 부적절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 명령하였으나 관리부서에서는 시정명령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에 소홀함이 있어 이를 개선 요구함.</p>	<p>○ 장례식장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가 더욱 중요함에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단속효과에 역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사료됨으로 관리부서에서는 단속방법을 개선하고, 이행여부 확인 등을 거쳐 우리 구 장례식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
10	“	박정자	<p>○ 현재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 문고에 도서를 구입하여 줌과 동시에 각 문고마다 월 1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새마을 문고 회원들은 이러한 지원 사실을 모른 채 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개선을 요구함.</p>	<p>○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도서를 구입하여 보급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새마을 문고 회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월례회의 시 회의자료에 게재하는 등 주민 홍보에 철저를 하여 새마을 문고 보조금 운영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p>

11	2007. 11.21	조길형	○ 민간 어린이집 차량 운행 현황을 살펴본바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또는 영아시트 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안전사고가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됨.	○ 관련 부서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차량의 안전벨트 및 영아시트 설치와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어린이들의 통학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바람.
12	“	최미경	○ 구민체육센터 내 설치된 화장실(1층 남,여)을 일용직 직원 식당으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어 개선 요구함.	○ 불법으로 개조된 화장실을 원상 복구토록 하고,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람,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13	“	최미경	○ 출장명령부에 의거 매월 말에 지급되는 업무추진 여비가 일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출장명령부에 담당자와 대직자가 동시에 출장이 이루어져 있음	○ 담당자와 대직자가 동시 출장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민원을 유발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 강구와 공무원에 지급되는 업무추진 여비 지급 시에는 출장명령부와 일치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바람.
14	“	최미경	○ 신길5동 어린이집, 대림3동 해태구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수탁자(운영체)가 동일하므로 관련된 조례 개정을 요구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조례 제20조(2개 이상의 위탁 금지) 구청장은 개인은 2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바,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포함하여 1개소 이상 위탁 금지' 하는 조례로 개정하기 바람.
15	2007. 11.22	구애라	○ 우리구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는 영등포역, 영등포 로터리(가로공원) 주변에서 즐비하게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과 포장마차, 차량타이어 점이 도로변과 보도를 점유하여 영업하거나 타이어를 적치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음.	○ 관계부서에서는 우리 구민이 불편 없이 편안하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노점상과 포장마차 그리고 차량 타이어 적치물 등 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각종 적치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강구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등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16	2007. 11.22	신홍식	<p>○ 용역업체의 청소차량 30대의 연간 세차비 예산이 38,880(천원)으로 예산대비 66%인 25,689(천원)에 낙찰되어 총 1,439대분의 세차비(계약금액÷1대 세차비 17,840)가 계약되었으나</p> <p>○ 현재까지 232대분만 세차하였고, 이는 16%의 예산 집행율로 나머지 84%는 불용될 것으로 사료 되는 바 계획 없는 예산수립으로 예산낭비 효과를 거두었고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았음.</p>	<p>○ 사업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해서 예산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예산 사업 시행에 있어서도 용역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p>
17	“	고현순	<p>○ 건물 또는 시설물 공사 발주시에는 통상적으로 시설공사, 전기공사, 조경공사 등을 일괄 입찰하여 공사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대방역 환경개선 공사 발주 시에는 시설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를 각각 분리 발주하여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사무행정 간소화에도 저촉되며, 지도, 감독에도 문제점이 발생됨</p>	<p>○ 계약부서 및 사업부서에서는 향후 각종 시설물 공사 시 충분한 업무 협조로 사전에 설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 바람.</p>
18	“	박성호	<p>○ 금년도에 우리구 발주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와 26건을 체결하는 등 수의 계약 과정이 투명치 않고, 특히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p>	<p>○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확인과 계약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특정업체와 잦은 수의 계약을 지양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19	2007. 11.22	박정자	<p>○ 동 주민자치센터 새마을 문고에서 보조금(1억 4천만원)을 집행하고 정산함에 있어 간이 영수증이나 실제 사용치 않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하고 있으며, 자원 봉사자에게 봉사료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실제로 자원 봉사하지 않은자의 수개월분의 자원 봉사료를 부당 청구하여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p>	<p>○ 새마을 문고를 비롯하여 각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과 정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 또한, 자원봉사자가 실제로 봉사를 했는지 현장 확인 또는 복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원 봉사자에 대한 봉사료를 지급할 것이며, 대금지급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여 소급하여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20	“	박정자	<p>○ 우리구 청소 대행사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봉투제작비 고액 체납 사업체가 있어(동진환경 9,115천원, 우성환경 12,011천원, 한양환경 5,152천원) 우리구 세수 감소를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 청소관련 민원(진정서, 인터넷 등)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2007년 205건)되고 있음과 관련 증가원인 등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 강구로 민원 발생 요인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p>	<p>○ 봉투제작비 체납분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관련 업체에 적극 독려하여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구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유형에 따른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
21	“	조길형	<p>○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보급한 양수기가 여름철 수방대책 기간에 주민들이 사용하고 난후에 정비와 보관함에 있어서 관리가 소홀하여 양수기 고장율이 높음. ○ 향후 양수기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흡함.</p>	<p>○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를 관리함에 있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양수기가 적정하게 수리되어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 관련부서에서 일괄 관리하는 등 양수기 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기 바람.</p>

22	2007. 11.23	신홍식	<p>○ 1년전의 미신고 불법광고물의 수는 18,970개이고, 2007년 7월 현재 17,145개로 겨우 9.6%인 1,825개가 줄어들어 매년 광고주와의 전쟁이 반복되나 이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만 할뿐 불법 광고물 양산 대책에 대하여는 전혀 추진치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p>	<p>○ 일반적으로 광고주들은 법과 조례의 이해가 부족한 만큼 광고 제작업체들이 대행해 줘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광고 제작업체들이 불법 광고물을 양산하는 만큼, 제작업체 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광고물 제작시마다 그 광고물에 고유번호를 부착케 하여 어느업체가 불법 광고물을 제작 설치하였는지 관리하여 불법 광고물 양산을 억제하는 한편 그 제작 업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기 바람.</p>
23	“	신홍식	<p>○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41개 위원회 회의개최를 총 217회 예정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2007년 11월 20일 현재까지 39%인 86회 개최로 개최실적이 저조함.</p> <p>○ 특히, 전문가 그룹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회 운영 실적이 미비한바 이는 예산 편성액의 61%가 불용되는 것으로 비 효율적 예산 편성이라 아니 할 수 없음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비효율적 예산 편성이 되었음.</p>	<p>○ 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기초자료를 준비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 편성은 과거 예산 편성대로 전례적으로 답습한 사례로,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전례 답습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예산편성으로 비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p>
24	“	박성호	<p>○ 사회단체에서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에 실제 차여 인원을 초과하여 식대등을 편성하여 예산 배정 신청을 하고 정산시에는 적격 증빙 서류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구청에 보고한바,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 및 사후관리가 미흡함.</p>	<p>○ 사회단체 보조금을 사용 시 10만원 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자료로 제출토록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개선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고, 또한 위문금 수령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현금 지급 시에는 수령인의 직접 날인 또는 서명을 유도하여 보조금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p>

25	2007. 11.23	조길형	○ 우리 구에 종합병원과 각종 개인 병원이 많지만 병원에서 배출되는 주사기, 약병, 솜 등 각종 병원성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통합하여 배출하고 있어 구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음.	○ 병원성 폐기물은 병원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병균을 감염 시킬 우려가 크므로 병원성 폐기물을 규정된 용기에 배출하거나 보관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통해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26	“	최미경	○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문화교육 프로그램 중 초등영어 교실을 운영 함에 있어 합법적인 절차와 자격 심사를 거쳐 적합한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무자격자를 불법 채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많은 구민과 학생들이 영어교육 열풍으로 원어민 영어강사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자격 있는 원어민 영어강사 채용이 중요하여짐에 따라 합법적이면서 능력과 자격있는 강사를 채용하여야 할 것이며, 불법 채용된 강사는 퇴사 조치 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27	2007. 11.26	김동식	○ 우리구 관내 일부 지역의 보도는 2005년 2월에 도로가 신설되어 이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미 부과하였음.	○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기 바람.
28	“	박성호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13조 4항에 의하면 원 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노인케어 센터 발주공사 시에는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음.	○ 하도급 공사 계약 시 관련 법령의 현금 비율 미만 지급 금지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9	“	최미경	○ 대영초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 울타리가 미설치 되어 불법 주차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우려됨.	○ 대영초교 앞 수쿨존은 어린이 안전 사고 예방이 주된 사업목적으로 어린이 보호가 우선 되어야 하고, 불법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방호울타리 설치를 적극 요구함.

30	2007. 11.26	최미경	<p>○ 왕벚나무 수세회복 중 외과수술 시 표피가 나무 색깔과 동일한 색으로 마무리 공사가 되어야 하며,</p> <p>○ 가로수 전지공사는 대부분 수형에 맞게 조절이 잘 되어 있으나 동일노선 상에도 수종이 달라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개선을 요구함.</p>	<p>○ 왕벚나무 수세회복 위탁 공사 시 철저한 관리 감독과 가로수는 동일 노선에 동일 수종으로 개량하도록 시정을 요구함.</p>
31	2007. 11.27	신홍식	<p>○ 우리구내 보도상 영업 시설물이 235개소가 있는데 시설물 운영자 선정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는데 자료상에는 2.1%인 5개소만 있는데 이는 관리에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음.</p> <p>○ 현재 서울시 시설물 운영자 부동산 현황조사 결과 전제 3,625개소 중 부자 운영권자가 24%를 차지함(10억이상 9명, 6억이상 35명, 4억이상 112명, 2억이상 421명, 2개이상 주택 소유자 128명 이 밖에 부자 운영권자로 예측된 398명이 재산조회 동의서를 미 제출중에 있음) 이것을 볼때 우리구도 부자 보도상 영업 시설물 운영권자가 비례한다고 봄.</p>	<p>○ 이는 별다른 기준 없이 운영권을 매년 기득권자에게 재 갱신을 해 줬기 때문이라 사료되며, 사후 전 운영권자가 재산조사를 철저히 해서 가능한 재산이 적은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운영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기 바람.</p>
32	“	박정자	<p>○ 신흥시장 도로개설 구간에 대한 보상이 2007년 9월에 되었으나 아직 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으며, 사려가 슈퍼의 주장(도로가 아니고 대지라고 주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실확인 하고 신속하게 대처 할 것.</p>	<p>○ 철거되지 않은 가설 점포가 도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상에 대한 불만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이 다시 점유할 수 있어 조속히 철거하여 도로 개설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p>